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66호 2002.12.12)

총 무 위 원 회
2002. 12. 27(화)

1. 심사경과

- 가. 2002. 12. 12 : 사천시장제출
- 나. 2002. 12. 12 : 총무위원회회부
- 다. 2002. 12. 23 : 사천시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보류
- 다. 2002. 12. 24 : 사천시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개정이유

- 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담당관 기능이 아닌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에서 국 소관 직제로 개편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의 개선·권고 등에 따라 계서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며.
- 2)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주민자치과)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소관 직제로 편제 조정함.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으로 직제 조정
 - 「해양수산물」 분장업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총무국의 환경보호과 다음으로 조정함.
 - 업무분장 : 수산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물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총무국 직제 편제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물**, 주민자치과로 함.
- 2)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함

3.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에서 총무국소

관 직제로 편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2. 12. 31에서 2004. 6.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담당관”기능은 참모기능이며 “과”기능은 집행기능으로서 해양수산담당관의 업무는 집행기능의 업무라고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하여도 관계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심사결과 : 원안의결

6.소수의견 : 없음